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10. 26 선고 2021가단581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

피 고 주식회사 A

변 론 종 결 2021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6. 8.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0. 6. 11. 주식회사 B(당시 ‘주식회사 C’, 이하 ‘B’이라 한다)과 사이에 “보증금액: 382,500,000원(331,500,000원으로 변경), ”보증기한: 2011. 6. 10.(2020. 5. 29.로 변경)“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B은 위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주식회사 D(이하 ‘D은행’이라 한다)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
나. B은 2020. 5. 26.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미결제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2020. 9. 18.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339,188,0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이에 원고는 현재 B에 대하여 ‘343,622,421원(= 대위변제금 339,188,082원 + 추가 보증료 1,915,430원 + 법적 절차비용 2,518,909원) 및 그중 대위변제금 339,188,082원에 대하여 2020. 9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8%로 계산한 이자’의 채권이 있다.

다. 피고는 2020. 6. 8.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“채권최고액: 200,000,000원“의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라.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항변의 요지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주식회사 E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2722)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,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련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)에 배당배제를 신청하여 배당이 배제되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을 제1,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주식회사 E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,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배당배제를 신청하여 배당이 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의 효력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도 효력이 있는바(민법 제407조), 원고가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소인 원상회복의 소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여 이 부분 소를 취하한 채 단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부분만 유지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,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지상